

대구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504
----------	------

제출년월일 : 2019. 10. 2.
제 출 자 : 대구광역시장

1.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에서 정책실명제 평가에 따라 대구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민간인 또는 민간기업을 참여배제(일정기간 또는 영구배제)하거나 소속기관 및 공무원에 대한 예산·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바가 없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행정안전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권고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나. 또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명이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2016.4.26.)되어 조례에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용근거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5조제1항, 안 제6조제1항)

나. 법률상 근거 없는 불이익 조치 조항 개정(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 외(※붙임)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기 타

1) 부패영향평가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4)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8. 30. ~ 9. 19.(21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5)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평가관리) 시장은 정책실명제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5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u>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3조의2에 따라 해당기관의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u></p> <p>② (생략)</p> <p>제6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 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이하 "중점관리사업"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p> <p>1. ~ 9. (생략)</p> <p>② (생략)</p> <p>제14조(평가에 따른 조치) 시장은 <u>평가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명령을 내릴 수 있다.</u></p> <p>1. <u>민간인 또는 민간기업 : 인센티브 제공 또는 향후 대구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일정기간 참여배제(또는 영구배제)</u></p>	<p>제5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 「<u>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u>」 -----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6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 ① ----- 「<u>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u>」 ----- ----- ----- ----- -----.</p> <p>1. ~ 9.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4조(평가관리) 시장은 <u>정책실명제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u></p>

- | | |
|--|--|
| <p>2. 공무원 : 포상 또는 징계</p> <p>3. 소속기관 : 예산 및 인사상의
혜택 부여 또는 불이익 조치</p> <p>4. 그밖에 시장이 정책평가상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p> | |
|--|--|

관계 법령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정책실명제 세부 규정)

- 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심의위원회의 구성,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평가기준 및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본조신설 2014. 2. 18.]
부칙 <제27103호, 2016. 4. 26.>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대구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제정수반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된, 정책실명제 평가에 따라 대구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민간인 또는 민간기업을 참여배제(일정기간 또는 영구 배제)하거나 소속기관 및 공무원에 대한 예산·인사상 불이익 조치 내용을 삭제하고, 책실명제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없으므로 미첨부 1호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 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 박경수

